

# '26년 2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본청분야] 필기시험 합격자 및 제출서류 공고

2026년 2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본청 분야 필기시험 합격자 및 제출서류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해양경찰청장

## 1 필기시험 합격자(응시번호순)

□ 해경학과(항해)\_경장 : 27명

연번	응시번호	연번	응시번호
1	20200001	15	20200070
2	20200002	16	20200073
3	20200009	17	20200075
4	20200010	18	20200076
5	20200013	19	20200079
6	20200018	20	20200095
7	20200037	21	20200099
8	20200039	22	20200100
9	20200042	23	20200101
10	20200047	24	20200102
11	20200051	25	20200104
12	20200058	26	20200110
13	20200061	27	20200112
14	20200066		

□ 해경학과(기관)\_경장 : 17명

연번	응시번호	연번	응시번호
1	20300001	10	20300025
2	20300011	11	20300028
3	20300014	12	20300029
4	20300015	13	20300030
5	20300018	14	20300034
6	20300019	15	20300046
7	20300020	16	20300050
8	20300021	17	20300053
9	20300023		

□ 중특단\_순경 : 16명

연번	응시번호	연번	응시번호
1	20900001	9	20900016
2	20900002	10	20900017
3	20900003	11	20900020
4	20900004	12	20900021
5	20900006	13	20900022
6	20900007	14	20900023
7	20900008	15	20900026
8	20900015	16	20900027

## 2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 **제출 기간:** '26. 7. 3.(금) 10:00 ~ 7. 9.(목) 18:00까지 \* 마감일 제외 24시간 가능
- **제출 방법:**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 이용
  - 서류는 [붙임 1] 『제출서류 총괄표』를 참조하여 목록에 해당하는 PDF 파일(파일명 : 응시번호\_응시자 성명)을 각각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두 가지의 서류를 한 페이지에 편집 금지(문자인식 불가)
  - 제출 기한 내에는 등록된 서류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으나, 제출 기한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제출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032-835-2336, 2436, 2536)에 연락하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① 제출서류 총괄표 : 전원 **[붙임 1]** 제출
- ② 응시자격 요건 증빙서류 : 전원 제출

연번	응시분야	응시요건	제 출 서 류
1	해경학과	학위(졸업생)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해양경찰 관련 전공학위 기재 확인) · 최종시험 예정일(8.7.) 이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可
		학위(재학생)	· 관련학과 재학증명서 (해양경찰 관련 전공학위 기재 확인) · 성적증명서 + 인정과목 이수 확인서 <b>모두 제출</b> · <b>[붙임 6]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과목 이수 확인서(45학점 이상)</b> · <b>[붙임 7] 유사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과목명이 다를 경우 작성)</b>
2	중특단	경력	· 관련 분야 재직(경력)증명서 (24개월 이상) + 4대 보험 자격 득실 증명.확인 + 소득금액증명 <b>모두 제출</b>
		자격증	· 관련 자격증 사본

- ③ 주민등록초본(상세,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전원 제출
-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전원 **[붙임 2]** 제출  
※ 해양경찰청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서는 병원에 제출
- 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전원 제출
- ⑥ 최종학력 증명서 사본(졸업증명서, 학위증) : 중특단 제출  
※ 해경학과는 “② 응시자격 요건 증빙서류”와 중복되므로 제출 불필요
- ⑦ 면접 가산 자격증 사본 : 해당자 제출(**[붙임 3]** 배점기준표 참조)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전원 **[붙임 4]** 작성 제출
- ⑨ (현역)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전역신청 내용 확인서 : 해당자 **[붙임 5]** 작성 제출  
※ 위의 서류 중 ④번을 제외한 서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이용하여 제출, ‘④ 신체검사서’는 봉인상태로 발급받아 종합적성검사 시 현장 제출

## □ 제출 서류별 주의사항

- (공통)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학위·경력증명서·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는 반드시 원본과 번역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통)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경우에 따라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① 제출 서류 목록 총괄표

1) 면접 가산 자격증 취득 예정인 경우 해당 자격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기재한 자격증에 한해 적성검사 시(7.11.(토)) 현장 제출이 가능함

2) 면접 가산 자격증 없는 경우 '0'점 기재 후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응시자격 요건 증빙자료 : 전원 제출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력】 : 재직(경력)증명서, 4대 보험 자격 득실 증명·확인, 소득 금액증명 모두 제출**

#### 1) 관련 분야 재직(경력)증명서

- 근무부서, 근무기간, 근무시간(상임·비상임 구분)\*, 직책, 세부담당 업무, 발급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경력 확인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Fax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필수 기재(예시: 주 2시간)

\*\* 응시자 본인이 인사담당자일 경우 확인자 서명은 복수(2인) 이상의 확인 서명 필요

- 담당업무,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기관의 담당자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조회 불가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예시]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1년’과 ‘민간 경력 2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관련 경력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자격득실 확인서 中 1종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 total.comwel.or.kr

- 국민연금 : 가입자 가입증명서 / www.nps.or.kr

- 건강보험 :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 www.nhis.or.kr

-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total.comwel.or.kr

3)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공고일 기준 6개월 내 발급본)

- 소득발생처(상호, 사업자번호) 공개여부란에 반드시 체크하고, 귀속년도는 경력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출력해야 합니다.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외에 경력기간동안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해당 서류도 제출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4) 공무원 경력증명서 제출자는 2), 3) 제출 불필요

5)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관련 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中 1종, ④ 소득

금액증명서 → ①,②,③,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홈텍스) 오른쪽 상단에  버튼 클릭 → ‘증명·등록·신청’ 클릭 → ‘민원증명’ 카테고리내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클릭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즉시발급 증명+’ 클릭 → ‘소득금액증명’(발급기한 설정)에서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사업자번호 확인 후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자격증】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앞면, 뒷면 모두 제출)**

- 1) 자격증 발급기관, 성명, 생년월일, 취득일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 2)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자격취득확인서’도 가능합니다.

**【학위】**

**<졸업생>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 1) 최종시험예정일('26.8.7.(금)) 이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합니다.

**<재학생>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인정과목 이수 확인서 모두 제출**

- 1) 45학점 이상 이수함을 증명하기 위한 **[붙임 6]**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동일·유사)과목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인정과목과 동일과목 모두를 인정하나,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3) 인정·동일과목의 과목명이 다를 경우에는 **[붙임 7]** 유사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와 강의계획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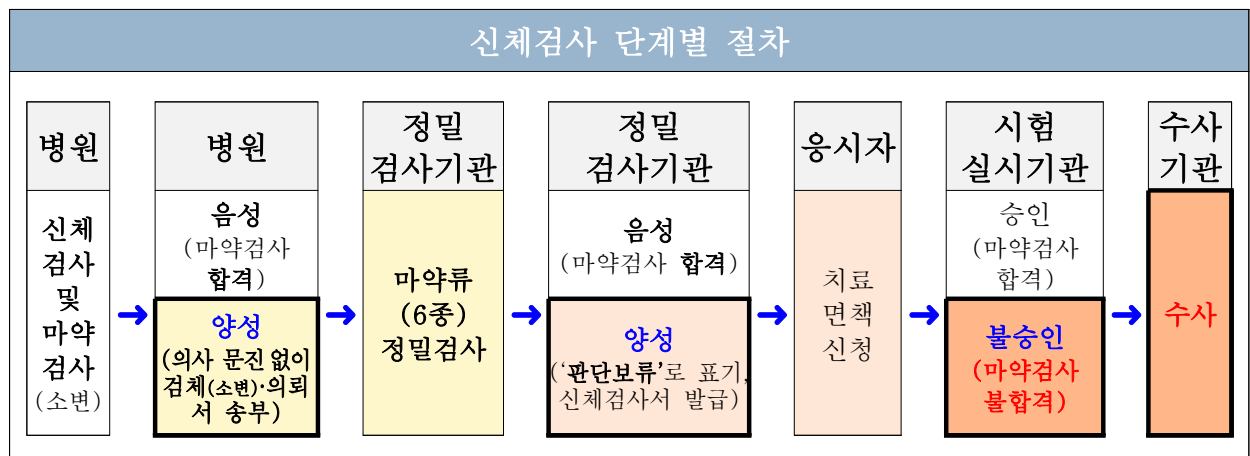
**③ 주민등록초본(상세)**

-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전체가 표기되어야 하며, 남자는 병역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2) 발급본만 인정됩니다.(‘열람용’은 인정불가)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붙임 2] 참조)**

- 1)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 마약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유효하게 발급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평가합니다.

\* 마약검사 가능병원 및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목록 **[별첨2 참조]**



- 2) 병원 방문 전 반드시 마약검사 가능여부 확인 후 신분증, 응시표, 사진 및 검사비용 등을 지참하고,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 3) 모든 응시자는 신체검사 시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마약류 정밀 검사 의뢰서’ 작성해서 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2] 양식 준수)
- 4) 몸에 부착된 테이핑은 신체검사 전에 제거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5)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서에 기재된 판정일로부터 4월 까지이며, 적성·신체검사 종료 예정일(7.16.)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 6) 검사 항목의 결과는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청력검사 후 정상 판정에 대한 범위(기준 dB) 숫자 표시, 검진기관명, 담당 의사 성명, 담당의사 서명은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 7) 색각이상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제출 시 종합병원 등에서 반드시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정밀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지,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8) 신체검사의 적격성 확인을 위해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9)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병원에서 봉인상태로 발급을 받아 적성검사 시(7.11.(토))제출해야 합니다.(임의 개봉 시 인정불가)
- 10) 문신을 이유로 ‘신체검사서’에서 판정보류를 받거나 문신을 자진 신고한 응시자는 신체검사 당일 기초진술서(사진 촬영 포함) 작성 후 외부위원을 포함한 ‘신체검사 심사위원회’(별도 일시 지정)를 구성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1) 초졸 또는 중졸인 경우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 2)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는 국내소재 최종학교(초등중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 3) 발급본만 인정됩니다.(‘열람용’은 인정불가)

#### ⑥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 1)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해당 서류는 면접시험 평가위원 제척·기피를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면접 가산 자격증 사본(**[붙임 3]** 배점기준표 참조, 최대 5점까지 인정)

- 1) 인명구조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개정에 따라 인명구조요원(강사)에 대해서는 '25.12.21.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갱신 포함)만 '28.12.20. 까지 자격을 인정(해양경찰청이 지정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제도 폐지,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참조)
- 2) 자격증 사본은 앞면·뒷면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자격증 발급기관, 성명, 생년월일, 취득(발급)일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 3)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자격취득확인서'도 가능합니다.
- 4) 가산점은 '제출 서류 목록 총괄표'에 기재된 점수가 아닌 응시자가 제출한 자격증 사본을 통해 인정되며,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자격이 유효해야 합니다.
- 5) 적성검사 전까지 취득 예정인 자격증은 반드시 총괄표에 기재해야 하고 기재한 자격증에 한해 적성검사 시 현장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 6) 외국어능력자격증은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 7) 토익시험 성적표의 경우 발급번호(registration number) 16자리를 기재해야 합니다.
- 8)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 시 가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며 채용자격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9) 면접 가산점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가산 점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점수 공개 및 수정 기간(7.24.(금)~7.27.(월))을 거쳐 확정되며, 공개(수정) 기간 종료 후에는 확인 및 수정이 불가합니다.

⑧ 개인정보 제공,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1) 서명은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정자로 서명해야 합니다.
- 2) 동의서는 두쪽 모아찍기 금지입니다.

### ⑨ (현역)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전역신청 내용 확인서

- 1) 軍 현역 복무자는 **[붙임 5]** 「(현역)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전역신청 내용 확인서」 1부를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는 현역 복무중인 최종합격자가 교육원 입교일 전에 전역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각 군 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 2)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교육원 입교 전 전역 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3 향후 일정 안내

### □ **적성·신체·체력검사** : '26. 7. 11.(토) ~ 7. 16.(목)

- 응시분야 별 상세일정 등 안내 사항은 해양경찰청, 각 지방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26. 7. 3.(금) 10:00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 제출서류 총괄표

## '26년 2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 서류 목록 총괄표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명	연락처
			휴대폰) 비상연락처)

### ○ 제출서류

편철 순서	제출대상	제 출 서 류 명	제출여부 (O, X)	비고
1	합격자 전원	응시자격 요건 증빙서류(해당사항에 반드시 동그라미) 1) 경력 2) 자격증 2-1) 자격증+경력 3) 학위 3-1) 학위+경력	예시) O 또는 X	
2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적성검사 시 현장 제출	
4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5		최종학력 증명서 사본 1부		중특단만
6		면접 가산 자격증(사본) 각 1부		해당자만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8	군복무자 (현역자)	(현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전역신청 내용 확인서		해당자만

### ○ 가산점 자격증 : 총 점 (만점 최대 5점 까지만 기재)

연번	자격증 명	자격증(등록)번호	발급(등록)일자	발급기관	가산 점수
1					
2					
3					
4					
5					

위 기재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하였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행위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4]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및 질환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신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 체격 항목 중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평가 항목	내 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 가능한 상태	팔다리와 손·발가락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 (허리휘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게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 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별지 제5호서식]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①시험실시기관	② 응시계급·분야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 검 사 내 용

키	cm	체중	kg
허리둘레	cm	혈압	
(교정)시력	좌: ( )	색신 (색각)	청력
	우: ( )		
			우: ( )dB
종양질환		이비인후질환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간질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질환	
신경질환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안질환	
정신질환		흉부X선검사	
직무에 적합한 신체		기타 특이사항	
문신			

## 약 물 검 사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	----	-----	------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 ]합격	합격 사유
합격 여부	[ ]판정보류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4월
------	-----------

210mm×297mm 백상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①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나. ②란에는 응시한 계급과 분야를 적어야 합니다.

(예: 경감 변호사, 경위 헬기조종, 경장 함정요원, 순경 공채 등)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결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에 따라야 합니다.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서

## <병원 작성 항목: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서>

의뢰기관명	수검자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요양기관번호	Chart No.	과명/병동	검체 채취 담당	(서명)
소변 채취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	담당의사	(서명) ■	
검사의뢰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			
마약류 6종 간이검사 결과(양성 약물에 체크)				
<input type="checkbox"/> 필로폰(메스암페타민) <input type="checkbox"/> 엑스터시(MDMA) <input type="checkbox"/> 대마 <input type="checkbox"/> 코카인(벤조일레고닌) <input type="checkbox"/> 케타민 <input type="checkbox"/> 아편(모르핀)				
소변 검체 채취방법	• 멸균된 깨끗한 plastic container (ex: 15 mL conical tube)에 보존제 없이 5~10mL 이상 채노 • 수검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을 정확히 기재      • 채노 시 희석 또는 불순물을 첨가하지 않는지 확인 • 정밀검사를 위한 검체는 1차 간이검사(선별검사)에서 양성인 검체를 그대로 의뢰			
정밀검사기관	(기관명) / (주소) / (FAX) / (TEL) / (요양기관번호)			

## <수검자(응시자) 작성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병원에서는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해양경찰청 및 마약정밀검사 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구분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응시 지방청, 응시번호	채용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4개월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수집·이용

구분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이용기간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채용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4개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

구분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민감정보	채용 신체검사 결과(마약검사 결과 포함)	채용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4개월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기관	제공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마약 장악감사 기관 해양경찰청 및 중부서해·남해·동해·제주 지방해양경찰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응시 지방청, 응시번호, 신체검사 결과(마약검사 결과 포함)	채용 신체검사(마약검사 포함), 신체검사 합격여부 판단, 수사기관 제공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수검자(응시자) 작성 항목: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 동의서>

상기 마약류 6종에 대한 간이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정밀검사 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되고,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밀 마약검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신체검사 판정결과 '판정정보류'로 처리되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되게 됩니다. 정밀검사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비용은 신청자(응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마약 정밀검사 의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수검자(응시자) 작성 항목>

응시분야:                      응시지방청:                      20                      응시번호:                      성명:                      (서명)

### 붙임 3

###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제6조 제9항 관련)

점수 분야	5 점	3 점	2 점	1 점
운 전	-	-	-	- 1종대형, 1종보통 -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에 한함)
무 도		- 무도 4단 이상	- 무도 3단	- 무도 1·2단
정보처리 (전 산)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처리기능사 - 정보기기응용기능사
전자·통신 (통 신)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전자응용기술사	- 통신설비·전자기능장 - 전자계산기·전자기사 - 무선설비·전파전자 통신·정보통신·방송 통신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전자 산업기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통신선로 ·방송통신산업기사	- 전자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통신기기 ·방송통신기능사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또는 1급) - E-Test 프로페셔널 1급 (워드, 엑셀, PPT 중 1)
법무·특허	- 변호사, 변리사	- 법무사	-	-
세무·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관세사	- 전산세무 1·2급 - 전산회계운용사 1급	- 전산회계 1·2급 - 전산회계운용사 2·3급
차량정비	-	- 자동차정비기사·기능 장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동력기계정비기능사
화 약 류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화약류 관리기사	- 화약류제조·화약류 관리산업기사	-
재 난	- 건설안전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가스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가스산업 기사	-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사
안전관리	수상구조사 1급 이상	-	인명구조(요원)강사 수상구조사 2급	- 인명구조요원
의 료	-	- 응급구조사 1급	- 응급구조사 2급 - 상담심리사 1급, 임상 심리사 1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 간호사 - 상담심리사 2급, 임상 심리사 2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국 어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점수 분야	5 점	3 점	2 점	1 점
영 어	-	- TOEIC 850 이상 - TOEFL(IBT 92, PBT 580 이상) - TEPS 800 이상(New TEPS 452 이상) - FLEX 76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780 이상 - PELT(main) 415 이상 - G-TELP Level 2 82 이상 - IELTS 5.5 이상	- TOEIC 750 이상 - TOEFL(IBT 71, PBT 527 이상) - TEPS 700 이상(New TEPS 386 이상) - FLEX 654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90 이상 - PELT(main) 340 이상 - G-TELP Level 2 69 이상 - IELTS 5.0 이상 - OPIc AL 등급	- TOEIC 650 이상 - TOEFL(IBT 57, PBT 487 이상) - TEPS 600 이상(New TEPS 327 이상) - FLEX 55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00 이상 - PELT(main) 240 이상 - G-TELP Level 2 56 이상 - IELTS 4.5 이상 - OPIc IH 등급
일 어	-	- J.L.P.T N1 - J.P.T 850 이상	- J.L.P.T N2 - J.P.T 750 이상	- J.L.P.T N3 - J.P.T 650 이상
중 국 어	-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신 H.S.K 5급 -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잠 수	- 잠수기능장 - 잠수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	-
레 저	-	-	-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2급 - 요트조종면허
해 양	- 해기사 1·2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3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4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5·6급(항해 기관 운항사)
수산·어로	- 수산양식기술사 - 어업기술사	- 수산양식기사 - 어업생산관리기사	- 수산양식산업기사 - 어로산업기사	- 수산양식기능사
드 론	-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실기평가 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지도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 中 1) 조종자(1종, 2종)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선)조종자
환 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 해양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 처리기사	- 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 비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 나.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 다.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2.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인명구조기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 무도가산점 인정 단체

구분	인정단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12)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48)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 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그리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대한권투협회	
※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 세계합기도협회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현대대한민국합기도지도자협회) △ 대한검도연합회 △ 한국무예진흥원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회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1)	택견보존회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단체

단체명	전화번호	단체명	전화번호
대한적십자사	02-3705-3617	(사)대한수중 핀수영협회	02-420-4293
(재)한국YMCA 전국연맹	02-735-4612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터	02-720-7145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02-886-8522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055-551-9413
(사)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사)대한안전연합	062-222-0841
(사)수상인명구조단	033-653-7913	(사)대한구조협회	054-476-2119
(사)한국해양구조협회	051-714-3695	(사)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협회	02-394-1331 031-943-4447
(사)한국수상안전진흥협회	070-5057-3377	(사)복지와 건강	055-755-7800
(사)한국구조연합회	02-365-1112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063-221-9800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02-928-2258	* '18.11.10 이후 지정취소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051-404-0900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02-422-6119
* '23.1.16. 이후 지정취소		* '18.11.17~'22.6.19 미지정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 고객센터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확인

※ 지정취소 단체 자격증은 지정취소일 이전 자격증만 인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개정에 따라 인명구조요원(강사)에 대해서는 '25.12.21.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갱신 포함)만 '28.12.20. 까지 자격을 인정(해양경찰청이 지정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제도 폐지)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학력·경력(병역)·자격·면허 등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항, 임용 결격사유,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인정과목과 동일과목 모두를 인정하나,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음

■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동일·유사)과목 이수 확인서**

- 학교/학부(과) :
- 성 명 :
- 생년월일 :

연번	과목명	학점	성적	연번	과목명	학점	성적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b>총</b>						<b>학점</b>	

위 사람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 인정과목,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 00학점을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대학교 ○○ 총장 ○ ○ ○ (직인)

담당자	(부서·직위)	성명	(인)
	(연락처)		

※ 인정·동일과목의 과목명이 다를 경우에는 '유사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와 강의계획서 추가 제출

■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유사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

- 학교/학부(과)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사람이 아래와 같이 이수한 과목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 인정과목 및 동일과목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니, 유사과목으로 인정을 요청합니다.

연번	인정과목명	동일과목명	이수과목명	학점	성적

20    년    월    일

○○ 대학교 ○○ 총장 ○ ○ ○ (직인)

담당자	(부서·직위)	성명	(인)
	(연락처)		

## 별첨 1

## 면접시험 가산자격증(인명구조요원) 관련 공지

- 「수상레저안전법」개정('25.12.21. 시행)으로 인해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는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인명구조요원(강사) 자격증은 '25.12.21.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갱신 포함)만 '28.12.20. 까지 자격을 인정합니다.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3] 인명구조(요원)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 ※ “해양경찰청 누리집 → 채용정보”에 게시된 「2026년 2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상 (17페이지 하단) **지정취소 단체 자격증은 지정취소일 이전 자격증만 인정한다.**
- 최종시험 예정일이 '26. 8. 7.인 경우 예시

① **최초발급 일자 : '24.8.15. / 유효기간 : '27.8.14.**

⇒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으로 **가산자격증 인정**

② **최초발급 일자 : '23.3.20. / 유효기간 : '26.3.19.**

⇒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이나, 유효기간이 도과되어 **가산자격증 불인정**

③ **최초발급 일자 : '26.3.20. / 유효기간 : '29.3.19.**

⇒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으로, **가산자격증 불인정**

④ **최초발급 일자 : '23.3.20. / 갱신 일자 : '26.4.20. / 유효기간 : '29.4.19.**

⇒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에 자격증을 최초 취득하고 갱신한 자격증으로,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아 **가산자격증 인정**

※ **④의 경우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함(다만, 갱신 자격증에 최초 취득일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응시자는 **최초 발급된 인명구조자격증 또는 갱신수료증 또는 자격증 발급기관에 “갱신 자격증”에 대한 확인증 요청(기관 별 발급방법 상이)으로 증빙해야 함.**

## 별첨 2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가능 병원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1	경희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회기동)	02-958-8988
2	경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가락동)	02-3400-1802
3	상계백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42, (상계동)	02-950-1156
4	미즈메디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95, (내발산동)	1588-2701
5	부민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89, (등촌동)	1577-7582
6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산내동)	02-2276-7158
7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신대방동)	1577-0075
8	성애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22, (신길동)	02-840-7383
9	씨엠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6길 13, (영등포동4가)	070-4698-7888
10	청구성심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73, (갈현동)	02-350-3281
11	동신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72, (홍은동)	02-396-9161
12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신림동)	02-1877-8875
13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 (마곡동)	02-6986-2330
14	원자력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공릉동)	02-970-2114
15	희명병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44, (시흥동)	02-6712-0133
16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 (용두동)	02-920-9348
17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암남동)	051-990-6697
18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	051-240-5310
19	대동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187, (명륜동)	051-550-9300
20	동래봉생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연로109번길 27, (안락동)	051-520-5850
21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051-607-2179
22	영도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대교동2가)	051-419-7746
23	온종합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 (당감동)	051-607-0784
24	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051-610-9865 051-610-9873
25	부민병원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9, (덕천동)	051-330-3078
26	해운대부민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84, (우동)	051-602-8130
27	해동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33, (봉래동3가)	051-410-6600
28	좋은삼선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26, (주례동)	051-310-9587
29	봉생기념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1, (좌천동)	051-664-4054
30	학교법인 춘해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 (범천동)	051-608-0270~1
31	학교법인 동의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 (양정동)	051-850-8763
32	부산보훈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051-601-6219
33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	051-240-7493	
34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삼덕동2가)	053-200-5791
3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명동)	053-650-3534
36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대명동)	053-620-3180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37	천주성삼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신매동)	053-790-1000
38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동)	053-258-4171
39	나사렛종합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97, (진천동)	053-643-3800
40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 (읍내동)	053-320-2500
41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중리동)	053-560-7387
42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 (신암동)	053-1688-7770
43	드림종합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53, (대명동)	053-640-8800
44	대구보훈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도원동)	053-630-7094
45	나사렛국제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98, (동춘동)	032-899-9999
46	부평세림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75, (청천동)	032-524-0591
47	비에스종합병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31-0	032-290-0321
48	인천사랑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26-0	032-457-2000
49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217	032-580-6000
50	인천세종병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20, (작전동)	032-240-8000
51	인천적십자병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032-899-4000
52	인천힘찬종합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72-0	032-1899-2220
53	현대유비스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03-0	032-888-7575
5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부평동)	032-280-6055
55	KS병원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220, (수완동)	062-975-9314
56	광주기독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7, (양림동)	062-650-5572
57	광주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139번길 51, (두암동)	062-260-7356
58	광주보훈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산월동)	062-602-6301
59	광주센트럴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6-0, (신가동)	062-950-9797
60	광주일곡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309, (일곡동)	062-608-7575
61	광주한국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223, (쌍촌동)	062-380-3050
62	상무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1-7, (치평동)	062-600-7224
63	서광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59번길 6, (금호동)	062-600-8060
64	운암한국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91, (운암동)	062-608-8232
65	건양대학교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관저동)	042-600-9999
66	대전한국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2	042-606-1450
67	대전성모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64, (대흥동)	042-220-9896
68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042-611-3763
69	대전보훈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82번길 147, (신탄진동)	042-939-0427
70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1599-7123(3번)
71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병원로 25, (전하동)	052-250-8340
72	서울산보람병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중평로 53,	052-255-7145
73	울산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신정동)	052-259-5264
74	울산엘리아병원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85, (호계동)	052-290-2230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75	동강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태화동)	052-241-1471
76	동천동강병원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큰길 215, (남외동)	052-702-3550
77	울산시티병원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7, (연암동)	052-280-9200
78	좋은삼정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51, (무거동)	052-220-7679
79	중앙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72, (신정동)	052-226-1886
80	엔케이세종병원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61, (나성동)	044-850-7700
81	고대의대부속안산병원	경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잔동)	031-412-4296
82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원천동)	1688-2118(2번)
83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지동)	031-249-8249
84	강남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11, (신갈동)	031-300-0123
85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정자동)	031-888-0786
86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95, (당왕동)	031-8046-5131
87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 (관고동)	031-630-4259
88	광명성애병원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6, (철산동)	02-2680-7385
89	뉴대성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91, (심곡동)	032-610-1165
90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 (선부동)	031-8040-1339
91	성남시의료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 (태평동)	031-738-7007
92	성남중앙병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12, (금광동)	031-799-5550
93	안성성모병원		경기도 안성시 시장길 58, (서인동)	031-675-6007
94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1, (산본동)	031-390-2741
95	시화병원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381, (정왕동)	031-5189-0293
96	동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우만동)	031-210-0285
97	화홍병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90번길 98, (호매실동)	031-8021-6858
98	단원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20, (초지동)	031-8040-5860
99	다니엘종합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61, (약대동)	032-670-0230
100	굿모닝병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38, (합정동)	031-5182-7649
101	김포우리병원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1, (걸포동)	031-999-1345
102	뉴고려병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장기동)	031-980-9114
103	사랑의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69, (성포동)	031-8084-0918
104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일동)	031-500-1182
105	메트로병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33번길 8, (안양동)	031-467-9984
106	조은오산병원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307, (오산동)	031-373-1806
107	차의과학대분당차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야탑동)	031-780-5050
108	안양샘병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9, (안양동)	031-463-4386
109	지샘병원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91, (당동)	031-389-3446
110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금오동)	031-820-5334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111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동)	031-828-5000
112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48, (신읍동)	031-539-9114
113	의정부백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22, (신곡동)	031-856-8111
114	현대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21, (진접읍)	031-528-9117
115	연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 20-0, (일산동)	033-741-1670
116	강원대학교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6, (효자동)	033-258-2000
117	강릉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007, (남문동)	033-610-1281
118	영월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 (영월읍)	033-370-9124
119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하평로 11, (평릉동)	033-530-3100
120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드미길 8, (장성동)	033-580-3151
121	강릉고려병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가로 30	033-649-0206
122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0	043-269-6566
123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82-0	043-840-8401
124	중앙제일병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36-0	043-533-1719
125	제천서울병원		충청북도 제천시 송문로 57-0	043-642-7725
126	효성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6-0	043-225-8522
127	옥천성모병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195-0	043-730-7072
128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0	043-249-2210
129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로 239-50	043-871-0246
130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안서동)
131	서산중앙병원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산업로 5, (수석동)		041-661-1063
132	의료법인 백제병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14, (취암동)		041-730-8985
133	보령아산병원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136, (죽정동)		041-930-5555
134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 (웅진동)		041-962-1231
135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석림동)		041-689-7000
136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홍성읍)		041-630-6177
137	대자인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3가)		063-240-2000
138	동군산병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49, (조촌동)	063-440-0300	
139	전주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길 13, (중화산동2가)	063-220-7200	
140	익산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969, (신동)	063-840-9114	
141	정읍아산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606-22, (용계동)	063-530-6000	
142	예수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중화산동1가)	063-230-8114	
143	군산의료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의료원로 27, (지곡동)	063-472-5000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144	남원의료원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충정로 365, (고죽동)	063-620-1114	
145	전주고려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67, (산정동)	063-240-7300	
146	광양사랑병원	전남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71, (중동)	061-797-7240	
147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 24, (조례동)	061-720-7133	
148	나주종합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로 5419, 나주종합병원	061-330-6136	
149	목포시의료원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용해동)	061-260-6472	
150	빛가람종합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49-0, (빛가람동)	061-820-0855	
151	여수전남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49, (광무동)	061-640-7157	
152	여천전남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95, (선원동)	061-690-6284	
153	영광종합병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 (영광읍)	061-350-8196	
154	영광기독병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5, (영광읍)	061-350-3038	
155	무안병원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 (무안읍)	061-450-3134	
156	목포중앙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23, (석현동)	061-280-3129	
157	순천제일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3, (조례동)	061-720-3406	
158	세안종합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795-2, (연산동)	061-260-6600	
159	해남종합병원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해남읍)	061-530-0131	
160	광양서울병원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93, (마동)	061-798-9896	
161	해남우리종합병원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97, (옥천면)	061-530-7171	
162	목포한국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83, (상동)	061-270-5448	
163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북문동)	054-850-6000
164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용흥동)	054-247-0551
165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모암동)		054-429-8114	
166	동국대의과대학경주병원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석장동)		054-748-9300	
167	상주적십자병원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 53, (남성동)		054-534-3501	
168	안동성소병원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99, (금곡동)		054-850-8114	
169	영주적십자병원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327-0, (가흥동)		054-630-0100	
170	김천제일병원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1길 12, (신음동)		054-420-9300	
171	문경제일병원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3길 25, (모전동)		054-550-7700	
172	상주성모병원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서성길 7, (냉림동)		054-532-5001	
173	의료법인 안동병원	경상북도 안동시 앙실로 11, (수상동)		054-840-1004	
174	포항세명기독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대도동)		054-275-0005	
175	차의과학대학부속구미차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0길 12, (형곡동)		054-450-9700	
176	포항성모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대잠동)		054-272-0151	
177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물금읍)	055-360-1280
178	강일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359, (구산동)	055-822-0100	
179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중앙동)	055-280-7619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180	베데스다복음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로 28, (신기동)	055-384-9901
181	연세에스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13, (이동)	055-548-7700
182	의료법인 거봉 백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5길 14, (상동동)	055-733-0000
183	맑은샘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477, (연초면)	055-731-1240
184	갑을장유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167-13, (부곡동)	055-310-6000
185	김해복음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33, (삼정동)	055-330-8888
186	청아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67	055-230-1500
187	에스엠지연세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월남동2가)	055-243-0100
188	조은금강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삼계동)	055-330-0300
189	제일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5, (강남동)	055-750-7123
190	진주고려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 (칠암동)	055-751-2500
191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성주동)	055-214-2000
192	창원파티마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명서동)	055-270-1000
193	창원한마음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사림동)	055-225-0000
194	한일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충무공동)	055-759-7777
195	마산의료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055-249-1234
196	중앙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0
197	한국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삼도일동)		064-750-0720
198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아라일동)		064-717-1580
199	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동홍동)		064-730-3465
200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연동)		064-740-5359

□ **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 검사 가능 병원: 8개소**

연번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1	경찰 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02-3400-1269
2	공안과 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37길 45	02-480-5000
3	공안과 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02-733-5111
4	바른눈서울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02-6203-3377
5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114
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길 82	031-787-2114
7	정근안과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67	051-668-8000
8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1899-0000

- 색각 이상자의 경우, 위 병원에서 색각경 검사(일명 아노말로스코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가능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또한, 위 명시한 의료기관 외에 색각경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색각 관련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